제328회 임시회 2014. 3. 20.(목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4. 3. 20.(목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12일

-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 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·관·경 협력체제인 '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'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협의회 기능(안 제3조)
 -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
 - 기관·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

- O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위원 25명 이내, 당연직 위원(도지사, 도의장, 교육감, 경찰청장)
 - 위촉직 위원 :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·단체장 및 전문가
-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
-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 -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 :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: 한철우)

금번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·관·경 협력체제인 '충청북도 지역치 안협의회'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 안 제3조에서는 법질서 학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, 기관·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 등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,

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은 25명 이내,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, 도의장, 교육감, 경찰청장 등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,

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

안 제15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금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강화 등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민·관·경 협력체제의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, 충북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

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626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4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·관·경 협력체제인 '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'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협의회 기능(안 제3조)
 -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
 - 기관·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
-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위원 25명 이내, 당연직 위원(도지사, 도의장, 교육감, 경찰청장)
 - 위촉직 위원 :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·단체장 및 전문가
-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
-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 -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 :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
- 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충북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충청북도에 둔다.
- 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
 - 2.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기관·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
 - 3.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
 - 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.
- 제5조(위촉) ①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, 충청북도의회의장, 충청북도교육감,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.
 -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·단체의 장
 - 2.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
 - 3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제6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, 각 기관·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7조(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
 - 2.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출국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 - 4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,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8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-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간사) 간사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
 - 2. 참여기관·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
 - 3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회의록 작성
 - 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- 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

참여기관·단체의 업무담당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충청북도 지역치안실무협의회(이하 "실무협의회"라 한다)를 두며,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기관에서 주관한다.

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·조정하며,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소집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,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.
- 제12조(회의의 공개)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수당 등) 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지원)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.
- 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○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, 기관· 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

2. 비용 발생원인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,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
- 3. 관련조문 : 안 제14조(수당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위촉위원 전원(21명) 참석, 회의 연 3회 개최

나. 추계 결과 : 4,410천원/연 (21명 위원 × 70,000원 참석수당 × 3회)

다. 재원조달방안 : 예산편성시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(Pool)에 반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'14년)	2차년도 ('15년)	3차년도 ('16년)	4차년도 ('17년)	5차년도 ('18년)	계
수 당	4,410	4,410	4,410	4,410	4,410	22,050

6. 작성자 :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이성수